

의안번호	2200594
의 퇴 인	유용원의원
회 답 일	2024.08.16.
추 계 번호	24D100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대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주택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2029년까지 3,735억원(연평균 7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임차료를 고려한 주택수당 지급	716	731	747	763	779	3,735	7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부대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주택수당)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권역별 주택수당 지원단가 및 권역별 지원대상은 국방부 용역보고서 「군인 주거보조비 도입방안 연구」(2023)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함
-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부대 소재지 임차료 시세를 고려한 주택수당 지원(안 제14조)

- 현행법은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주택수당 지급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22년까지 주택수당은 일괄적으로 8만원씩 지급되었으나, 2023년 16만원으로 인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¹⁾으로 2024년부터 3년 미만 복무한 간부도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4년부터 주택수당 지급대상자가 3만 5,058명으로 확대

[표 2] 주택수당 지급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급 건수(명)	24,605	26,370	28,101	31,582	33,728
단가(천원/월)	80	80	80	80	160
총지급액(백만원/년)	23,621	25,316	26,977	30,319	64,758

자료: 국방부

1) 2023년까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주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부터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이 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이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음

- 개정안에 따른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부대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의 용역보고서 「군인 주거보조비 도입방안 연구」(2023)는 전국을 4개 권으로 구분하고,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주택수당을 차등적용하고 있음
 - 권역별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지급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권역별 주택수당 지급대상 추정

(단위: 명)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부양가족O	부양가족X	부양가족O	부양가족X	부양가족O	부양가족X	부양가족O	부양가족X
지급인원	470	1,208	3,750	9,645	1,112	2,860	4,484	11,531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군인 주거보조비 도입방안 연구」(2023)

- 주택수당 지원단가는 2023년 상반기 중위월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4] 주택수당 월 지원단가

구분	지역명	지원단가(천원/월)	
		부양가족O	부양가족X
1권역	서울	800	400
2권역	경기도, 인천	700	350
3권역	대구, 대전, 울산, 제주도, 광주, 부산, 세종	500	250
4권역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00	160

자료: 국방부 용역보고서, 「군인 주거보조비 도입방안 연구」(2023)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전국 기준 월세가격 연평균증가율은 1.1%임

[표 5] 주택월세가격지수 동향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지수	99.5	99.7	101.4	102.7	104.0	1.1

주: 각 년도 1월 기준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추계에서는 국방부가 제출한 권역별 주택수당 지원단가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전국 기준 월세가격 연평균증가율 1.1%를 적용하여 주택수당 지원단가를 추정

[표 6] 주택수당 월 지원단가 추정: 2025~2029

(단위: 천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1권역	부양가족O	818	827	836	845	855
	부양가족X	409	413	418	423	427
2권역	부양가족O	716	724	732	740	748
	부양가족X	358	362	366	370	374
3권역	부양가족O	511	517	523	528	534
	부양가족X	256	258	261	264	267
4권역	부양가족O	307	310	314	317	321
	부양가족X	164	165	167	169	1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에서 추정한 주택수당 월 지원단가에 2024년 기준 주택수당 월지원단가 16만원을 감한 월 추가지원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주택수당 추가 월 추가지원단가 추정: 2025~2029

(단위: 천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1권역	부양가족O	658	667	676	685	695
	부양가족X	249	253	258	263	267
2권역	부양가족O	556	564	572	580	588
	부양가족X	198	202	206	210	214
3권역	부양가족O	351	357	363	368	374
	부양가족X	96	98	101	104	107
4권역	부양가족O	147	150	154	157	161
	부양가족X	4	5	7	9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대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주택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2029년까지 3,735억원(연평균 7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권역	부양가족O	37	38	38	39	39	191
	부양가족X	36	37	37	38	39	187
2권역	부양가족O	250	254	257	261	265	1,286
	부양가족X	229	234	238	243	248	1,191
3권역	부양가족O	47	48	48	49	50	242
	부양가족X	33	34	35	36	37	174
4권역	부양가족O	79	81	83	85	86	413
	부양가족X	5	7	10	13	15	50
합계		716	731	747	763	779	3,7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부대소재지 주변 주택 임차료 시세 및 지원대상인원을 국방부 용역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